



목 포 시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6호 2021. 1. 4.(월)

규 칙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16
-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2

훈 령

-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4

공 고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차 연장 행정명령 발령----- 68

회람							
----	--	--	--	--	--	--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4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08 호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121호부터 제1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1.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정·현원 관리
- 122. 공무원근로자 임면 및 징계
- 123.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 124. 공무원근로자 인사위원회 운영
- 125. 공무원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관리
- 126. 공무원 임금결정 및 퇴직금 지급
- 127. 공무원근로자 4대 사회보험 업무
- 128. 공무원근로자 호봉 관리
- 129.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130. 기간제근로자 임금결정
- 131.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영

제12조 중 제8호,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에 제75호부터 제7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75. 보호대상아동 상담·가정환경조사
- 76.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 77.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예시설관리과장·체육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목포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를 “관광과장·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제18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광거점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총괄 관리
2. 관광거점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3.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
5. 관광 거버넌스 구축

제19조(종전의 제18조)에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1. 목포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장 제5절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2장 제6절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로 하고, 제30조(종전의 제32조)에 제153호부터 제15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3. 전시 비축 물자관리
154. 거주외국인 각종 재해시 응급구호 및 지원
155. 재난관리 시설 운영
156.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

제3장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4조 및 제35조로 하고, 제35조(종전의 제37조) 제3항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급성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총괄

제4장 제1절 제38조 및 제39조를 각각 제36조 및 제37조로 하고, 제2절 제40조 및 제41조를 각각 제38조 및 제39조로 한다.

제3절 제42조 및 제43조를 각각 제40조 및 제41조로 하고, 제41조(종전의 제43조)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하수·분뇨유입·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제4절 제44조 및 제45조를 각각 제42조 및 제43조로 하고, 제43조(종전의 제45조)의 제9호를 삭제한다.

제4장 제5절 제46조 및 제47조를 제8절 제50조 및 제51조로 하고, 제5장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제52조 및 제53조로 한다.

제4장 제5절(제44조 및 제4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절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제4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제6절(제46조 및 제4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46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장 제7절(제48조 및 제49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절 목포자연사박물관

제48조(소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9조(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득,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감사실,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을 “감사실, 기획예산과, 문화예술과, 공보과, 세정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자치행정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민원봉사실,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기업유치과, 관광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를 “기업유치과, 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지역경제과, 일자리청년정책과, 해양항만과, 수산진흥과, 농업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환경시설관리과, 수도과, 하수과, 남해수질관리사무소, 북항수질관리사무소”로 한다.

② “목포시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문예시설관리과”를 “문예시설관리사무소”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0. (생략) <신설>	제11조(자치행정과) ----- -----. 1. ~ 120. (현행과 같음) 121.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정· 현원 관리 122. 공무원근로자 임면 및 징계 123.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124. 공무원근로자 인사위원회 운 영 125. 공무원근로자 근무성적평정 관리 126. 공무원 임금결정 및 퇴직금 지급 127. 공무원근로자 4대 사회보험 업무 128. 공무원근로자 호봉 관리 129. 공무원 교육계획 수립 및 교 육 실시 130. 기간제근로자 임금결정 131. 기간제근로자 사전심사제 운 영
제12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 (생략)	제12조(사회복지과) ----- -----. 1. ~ 7. (현행과 같음)

8. 전시 비축 물자관리

9. ~ 14. (생략)

15. 거주외국인 각종 재해시 응급구호
및 지원

16. ~ 78. (생략)

제14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74. (생략)

<신설>

제2장 제4절 관광문화체육국

제16조(관광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은 지
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으로, 문화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문예시설관리
과장·체육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
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목포
자연사박물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8. <삭제>

9. ~ 14. (현행과 같음)

15. <삭제>

16. ~ 78. (현행과 같음)

제14조(여성가족과) -----
-----.

1. ~ 74. (현행과 같음)

75. 보호대상아동 상담·가정환경
조사76. 보호대상아동 개별보호·관리
계획 수립77. 보호아동 양육상황 점검 및 사
후관리

제2장 제4절 관광문화체육국

제16조(관광문화체육국) 국장은 지방
서기관으로 보하고, 관광과장·관광
거점도시추진단장은 지방행정사무
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
예술과장·교육체육과장은 지방행
정사무관으로 보한다.제18조(관광거점도시추진단) 관광거
점도시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8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0. (생 략)

<신 설>

제19조 (생 략)

제20조 ~ 제22조 (생 략)

제2장 제5절 경제산업국

제23조 ~ 제29조 (생 략)

제2장 제6절 안전도시건설국

제30조 ~ 제31조 (생 략)

제32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2. (생 략)

<신 설>

제33조 ~ 제35조 (생 략)

1.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총괄 관리
2. 관광거점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발굴
3.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관광거점도시 브랜드 구축
5. 관광 거버넌스 구축

제19조 (문화예술과) -----
-----.

1. ~ 40. (현행과 같음)

41. 목포문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20조 (현행 제19조와 같음)

<삭 제>

제21조 ~ 제27조(현행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제28조 ~ 제29조(현행 제30조부터
제31조까지와 같음)

제30조 (안전총괄과) -----
-----.

1. ~ 152. (현행과 같음)

153. 전시 비축 물자관리

154. 거주외국인 각종 재해시 응급구호
및 지원

155. 재난관리 시설 운영

156.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

제31조 ~ 제33조(현행 제33조부터

제3장 보건소

제36조 (생 략)

제37조 (생 략)

① ~ ② (생 략)

③ 건강증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39. (생 략)

<신 설>

제4장 사업소

제1절 환경수도사업단

제38조 ~ 제39조 (생 략)

제2절 도시발전사업단

제40조 ~ 제41조 (생 략)

제3절 남해수질관리사무소

제42조 (생 략)

제43조 (생 략)

1. ~ 17. (생 략)

<신 설>

제4절 북항수질관리사무소

제35조까지와 같음)

제34조 (현행 제36조와 같음)

제35조 (현행 제37조와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건강증진과장은 -----
-----.

1. ~ 39. (현행과 같음)

40. 급성감염병 대응 및 역학조사
총괄

제36조 ~ 제37조(현행 제38조부터
제39조까지와 같음)

제38조 ~ 제39조(현행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와 같음)

제40조 (현행 제42조와 같음)

제41조 (현행 제43조와 같음)

1. ~ 17. (현행과 같음)

18. 하수·분뇨유입·유출 수질분석과
시험기기 운영 및 약품처리 관리

제44조 (생 략)

제45조 (생 략)

1. ~ 8. (생 략)

9. (생 략)

10. ~ 17. (생 략)

<신 설>

제42조 (현행 제44조와 같음)

제43조 (현행 제45조와 같음)

1. ~ 8. (현행과 같음)

<삭 제>

10. ~ 17. (현행과 같음)

제5절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제44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5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사방호·방화에 관한 종합기획조정
2. 입장권(열람권) 등의 발급·검인·
검표, 시설물 사용료 징수 등
3. 재산관리·시설물 종합관리 및 개
보수 등 영선에 관한 사항
4. 조경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냉난방, 통신, 전기, 기계, 음향,
소방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관리
6. 문화예술전시·공연행사 홍보 및
기록유지
7. 공연계획 및 공연장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8. 공연물 제작·홍보 및 공연물품
수급에 관한 사항
9.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10. 공연장, 연습실, 분장실관리

<신 설>

11. 전시계획 및 전시실 대관 사용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 관리 및 미술활동의 홍보·보급에 관한 사항

13. 전시 소품, 공연 소품 유지관리

14. 기타 무대운영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15.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절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제46조(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7조(분장사무) 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청사 방호·방화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시설의 입장료, 관람료, 사용료 관리

5. 체육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부주산 체육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8. 각종 기계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절 목포자연사박물관

제48조(소장의 직급) 관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9조(분장사무) 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입장권 매·검표 관리
2. 재산관리·청사 시설유지 관리 및 방화·방호에 관한 사항
3. 전시시설 임대에 관한 사항
4. 관람객 안내 및 안전관리
5. 박물관 정보시스템(전산·영상·홈페이지)운영 관리
6. 박물관에 관한 백서, 간행물의 제작 및 대외홍보 사항
7.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강연회, 연구회 등 개최
8. 박물관 특별전시 및 기획전시 계획수립 및 시행
9. 박물관 잔디공원, 비파원 및 주차 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0. 박물관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2. 소장품의 조사·연구 및 수집, 기증, 기탁에 관한 사항
13. 소장품 관리·전시 및 전산화 등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장품 훈증 및 소독, 복원에 관한 사항
15. 소장품 보존 환경조사 연구 및 지원 사항

16. 자연사에 속하는 지질, 동·식물, 곤충, 해양생물, 조·포유류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7. 자연사 및 향토사 조사 연구에 관한 학술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 및 지원
18. 향토문화자료의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19. 학술조사 연구 및 연구결과의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20.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관리
21.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수장고 소장 유물 관리
22.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회 개최
23. 목포생활도자박물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24. 목포생활도자박물관 전시품 수집 및 연구
25. 도자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6. 체험공방 프로그램 운영
27.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품 관리
28.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수장고 소장품 관리
29.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정보시스템 (전산·영상·홈페이지) 운영 관리
30.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전시회 개최
31.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활성화계획 수립·추진
32. 그 밖의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4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09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 (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296	575	23	98	310	290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75	568	23	98	296	290
	3급	1	1				
	4급	9	5	1	1	2	
	5급	69	26	3	3	14	23
	6급	256	127	4	14	64	47
	7급	328	173	7	15	82	51
	8급	336	122	8	52	77	77
	9급	276	114	0	13	57	92
연구직	계	17	4			13	
	연구관						
	연구사	17	4			13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사	3	2			1	

[별표 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총계			1,296	<u>575</u>	23	98	<u>310</u>	<u>290</u>
정무직		합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일반직 합계	1,275	<u>568</u>	23	98	<u>296</u>	<u>290</u>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9	5	1	1	2	
		행정	3	3				
		기술	1			1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u>69</u>	<u>26</u>	3	3	<u>14</u>	23
		행 정	19	7	1			1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u>17</u>	<u>9</u>	1		<u>4</u>	3
		행정+학예연구관	1	<u>0</u>			<u>1</u>	
		행정+사회복지+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시설+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일반직	6급	소계	<u>256</u>	<u>127</u>	4	<u>14</u>	<u>64</u>	47
		행 정	<u>60</u>	<u>31</u>	3		4	22
		세 무	<u>7</u>	<u>7</u>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u>1</u>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u>23</u>	<u>11</u>				12
		행정+전산	8	7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u>7</u>	<u>4</u>			3	
		행정+시설	47	<u>27</u>			<u>20</u>	
		행정+학예연구사	2				<u>2</u>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u>2</u>				<u>2</u>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u>6</u>			<u>3</u>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수의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u>7</u>	6			<u>1</u>	
		행정+공업+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시설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환경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u>1</u>	
		행정+농업+환경+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수의+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환경연구사	1				1	
		운 전	<u>4</u>	<u>3</u>			1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토목운영	<u>1</u>				<u>1</u>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u>2</u>	1			<u>1</u>	
일반직	7급	소계	328	173	7	15	82	51
		행 정	111	57	6		18	30
		세 무	<u>22</u>	<u>21</u>			1	
		사회복지	<u>35</u>	<u>17</u>				18
		전 산	6	<u>5</u>			<u>1</u>	
		방 호	1				1	
		공 업	32	<u>13</u>			<u>19</u>	
		농 업	2	2				
		녹 지	3				3	
		해양수산	5	5				
		보 건	1	1				
		의료기술	1			1		
		간 호	<u>3</u>			<u>3</u>		
		환 경	<u>5</u>				<u>5</u>	
		시 설	<u>27</u>	<u>19</u>			8	
		방송통신	3	3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u>6</u>	<u>3</u>				3
		행정+전산	3	3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u>0</u>			<u>1</u>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 전	<u>14</u>	<u>5</u>	1		8	
		위 생	2	1			1	
		토목운영	<u>0</u>				<u>0</u>	
		건축운영	<u>1</u>				<u>1</u>	
		전기운영	3				<u>3</u>	
		기계운영	<u>3</u>				<u>3</u>	
		열관리운영	1				<u>1</u>	
		사무운영	<u>1</u>	<u>1</u>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8급	소계	336	122	8	52	77	77
		행 정	94	46	1		17	30
		세 무	11	9			2	
		사회복지	46	12				34
		속 기	3		3			
		전 산	2	1	1			
		공 업	16	3		1	12	
		농 업	1	1				
		녹 지	5				5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간 호	31	1		30		
		환 경	2				2	
		시 설	28	17			11	
		방송통신	3	1			2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0	0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전산+방송통신+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운 전	14	6	1		7	
		위 생	0	0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2			4	
		기계운영	6	0			6	
		열관리운영	0	0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3		1		2	

직종별	직급	기관별 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반직	9급	소계	276	114	0	13	57	92
		행 정	83	33			6	44
		세 무	4	4				
		전 산	3	3				
		사회복지	70	27		3		40
		공 업	17	6			11	
		농 업	1	1				
		녹 지	3				3	
		해양수산	2	2				
		보 건	6			6		
		환 경	4				4	
		시 설	19	15			4	
		방송통신	3	2			1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방 호	0	0				
		운 전	21	6		3	12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0	1			9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7	3			1	3
연구직		연구사합계	17	4			13	
		학예연구사	11	3			8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		지도사합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1〕 목포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별		계	본청	의회	직속	사업소	동
총 계		1,296	621	23	98	263	291	총 계		1,296	575	23	98	310	290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장	1	1						시장	1	1				
일반직	계	1,275	609	23	98	254	291	일반직	계	1,275	568	23	98	296	290
	3급	1	1						3급	1	1				
	4급	9	5	1	1	2			4급	9	5	1	1	2	
	5급	68	28	3	3	11	23		5급	69	26	3	3	14	23
	6급	248	133	4	13	51	47		6급	256	127	4	14	64	47
	7급	328	181	7	13	76	51		7급	328	173	7	15	82	51
	8급	340	133	8	55	66	78		8급	336	122	8	52	77	77
	9급	281	128	0	13	48	92		9급	276	114	0	13	57	92
연구직	계	17	9			8		연구직	계	17	4			13	
	연구관								연구관						
	연구사	17	9			8			연구사	17	4			13	
지도직	계	3	2			1		지도직	계	3	2			1	
	지도관								지도관						
	지도사	3	2			1			지도사	3	2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별표2〕 목포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총계	1,296	621	23	98	263	291	총계	1,296	575	23	98	310	290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시 장	1	1					시 장	1	1				
일반직 계	1,275	609	23	98	254	291	일반직 계	1,275	568	23	98	296	290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 정	1	1					행 정	1	1				
4급 소계	9	5	1	1	2		4급 소계	9	5	1	1	2	
행 정	3	3					행 정	3	3				
기 술	1			1			기 술	1			1		
행정+기술	5	2	1		2		행정+기술	5	2	1		2	
5급 소계	68	28	3	3	11	23	5급 소계	69	26	3	3	14	23
행 정	19	7	1			11	행 정	19	7	1			11
시 설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6	10	1		2	3	행정+시설	17	9	1		4	3
행정+학예연구관	1	1			0		행정+학예연구관	1	0			1	
행정+사회복지+ 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공업+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보건	2	2					행정+사회복지+ 보건	2	2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공업+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현							개						
행							정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시설+ 해양수산	2	2					행정+시설+ 해양수산	2	2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환경+시설	2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보건+환경	1				1	
공업+환경+시설	1				1		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농업+ 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농업+ 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 농촌지도관	1				1		행정+녹지+시설+ 농촌지도관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환경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시설	1				1	
행정+보건+약무+ 간호	1			1			행정+보건+약무+ 간호	1			1		
보건+의무+약무+ 간호	1			1			보건+의무+약무+ 간호	1			1		
6급 소계	248	133	4	13	51	47	6급 소계	256	127	4	14	64	47
행 정	59	30	3		4	22	행 정	60	31	3		4	22
세 무	6	6					세 무	7	7				
사회복지	8	3				5	사회복지	8	3				5
방 호	1	1			0		방 호	1	0			1	
공 업	2				2		공 업	2				2	
해양수산	2	2					해양수산	2	2				
보 건	1			1			보 건	1			1		
시 설	3	1			2		시 설	3	1			2	
행정+세무	5	3			1	1	행정+세무	5	3			1	1
행정+사회복지	22	10				12	행정+사회복지	23	11				12
행정+전산	8	7	1				행정+전산	8	7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	5				5		행정+환경	5				5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보건	3			3			행정+보건	3			3		
행정+공업	8	5			3		행정+공업	7	4			3	
행정+시설	47	32			15		행정+시설	47	27			20	

현							개						
행							정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학예연구사	2	<u>2</u>			<u>0</u>		행정+학예연구사	2	<u>0</u>			<u>2</u>	
행정+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공업+환경	<u>1</u>				<u>1</u>		공업+환경	<u>2</u>				<u>2</u>	
공업+시설	3				3		공업+시설	3				3	
공업+환경연구사	1				1		공업+환경연구사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약무	1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u>5</u>			<u>2</u>		3	보건+간호	<u>6</u>			<u>3</u>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 사회복지	2					2	행정+전산+ 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수의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시설	5	5				
행정+전산+ 방송통신	2	2					행정+전산+ 방송통신	2	2				
행정+공업+시설	<u>6</u>	6			<u>0</u>		행정+공업+시설	<u>7</u>	6			<u>1</u>	
행정+공업+ 학예연구사	1	1					행정+공업+ 학예연구사	1	1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녹지+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해양수산+ 시설	3	3				
행정+보건+ 식품위생	1			1			행정+보건+ 식품위생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 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 학예연구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행정+시설+녹지+ 농촌지도사	1				1	
공업+보건+ 환경연구사	1				1		공업+보건+ 환경연구사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의료기술+약무+ 간호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보건+의료기술+ 약무	1			1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u>1</u>			<u>0</u>		행정+공업+시설+ 방송통신	1	<u>0</u>			<u>1</u>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환경+ 농촌지도사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행정+농업+수의 +농촌지도사	2	2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공업+수의+환경 +환경연구사	1				1	
운 전	3	2			1		운 전	4	3			1	
건축운영	1	1					토목운영	1				1	
통신운영	1	1					건축운영	1	1				
전기운영	2				2		통신운영	1	1				
기계운영	1				1		전기운영	2				2	
전기운영+ 기계운영	1				1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1	1					전기운영+ 기계운영	1				1	
7급 소계	328	181	7	13	76	51	사무운영	2	1			1	
행 정	111	57	6		18	30	7급 소계	328	173	7	15	82	51
세 무	23	22			1		행 정	111	57	6		18	30
사회복지	32	14				18	세 무	22	21			1	
전 산	6	6			0		사회복지	35	17				18
방 호	1				1		전 산	6	5			1	
공 업	32	15			17		방 호	1				1	
농 업	2	2					공 업	32	13			19	
녹 지	3				3		농 업	2	2				
해양수산	5	5					녹 지	3				3	
보 건	1	1					해양수산	5	5				
의료기술	1			1			보 건	1	1				
간 호	1			1			의료기술	1			1		
환 경	4				4		간 호	3			3		
시 설	25	17			8		환 경	5				5	
방송통신	3	3					시 설	27	19			8	
행정+세무	3	3					방송통신	3	3				
행정+사회복지	7	4				3	행정+세무	3	3				
행정+전산	3	3					행정+사회복지	6	3				3
행정+공업	3	3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3	3				
							행정+농업	1	1				

현							개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5	1			4		행정+환경	5	1			4	
행정+시설	4	3			1		행정+시설	4	3			1	
행정+학예연구사	1	<u>1</u>			<u>0</u>		행정+학예연구사	1	<u>0</u>			<u>1</u>	
전산+방송통신	2	2					전산+방송통신	2	2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공업+환경	1				1		공업+환경	1				1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식품위생	4			4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약무+간호	1			1		
보건+간호	6	1		5			보건+간호	6	1		5		
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운 전	<u>15</u>	<u>6</u>	1		8		운 전	<u>14</u>	<u>5</u>	1		8	
위 생	2	1			1		위 생	2	1			1	
토목운영	<u>1</u>				<u>1</u>		토목운영	<u>0</u>				<u>0</u>	
건축운영	<u>2</u>	2			<u>0</u>		건축운영	<u>1</u>	<u>0</u>			<u>1</u>	
전기운영	3	1			<u>2</u>		전기운영	3	<u>0</u>			<u>3</u>	
기계운영	5	1			<u>4</u>		기계운영	<u>3</u>	<u>0</u>			<u>3</u>	
열관리운영	1	1			<u>0</u>		열관리운영	1	<u>0</u>			<u>1</u>	
사무운영	<u>2</u>	<u>2</u>					사무운영	<u>1</u>	<u>1</u>				
8급 소계	<u>340</u>	<u>133</u>	8	<u>55</u>	<u>66</u>	<u>78</u>	8급 소계	<u>336</u>	<u>122</u>	8	<u>52</u>	<u>77</u>	<u>77</u>
행 정	94	46	1		<u>16</u>	<u>31</u>	행 정	94	46	1		<u>17</u>	<u>30</u>
세 무	<u>10</u>	9			<u>1</u>		세 무	<u>11</u>	9			<u>2</u>	
사회복지	<u>45</u>	<u>11</u>				34	사회복지	<u>46</u>	<u>12</u>				34
속 기	3		3				속 기	3		3			
전 산	2	1	1				전 산	2	1	1			
공 업	<u>14</u>	<u>5</u>		1	<u>8</u>		공 업	<u>16</u>	<u>3</u>		1	<u>12</u>	
농 업	1	1					농 업	1	1				

현							개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녹 지	5				5		녹 지	5				5	
해양수산	4	4					해양수산	4	4				
보 건	5			5			보 건	5			5		
식품위생	2			2			식품위생	2			2		
의료기술	5			5			의료기술	5			5		
간 호	34	1		33			간 호	31	1		30		
환 경	1				1		환 경	2				2	
시 설	28	20			8		시 설	28	17			11	
방송통신	3	3			0		방송통신	3	1			2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사회복지	13					13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농업	2	2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보건	2	1		1		
행정+환경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6	5			1		행정+시설	6	5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방재안전	1	1				
전산+방송통신	1	1					전산+방송통신	1	1				
공업+환경	4				4		공업+환경	3				3	
공업+시설	1				1		공업+시설	1				1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식품위생	2			2		
보건+간호	3			3			보건+간호	3			3		
의료기술+간호	2			2			의료기술+간호	2			2		
시설+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0	0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사회복지+간호	1			1			사회복지+간호	1			1		
방 호	1	1					방 호	1	1				

현							개 정 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운 전	14	6	1		7		운 전	14	6	1		7	
위 생	<u>1</u>	<u>1</u>					위 생	<u>0</u>	<u>0</u>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6	2			4		전기운영	6	2			4	
기계운영	<u>7</u>	<u>1</u>			6		기계운영	<u>6</u>	<u>0</u>			6	
열관리운영	<u>1</u>	<u>1</u>					열관리운영	<u>0</u>	<u>0</u>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u>4</u>	<u>1</u>	1		2		사무운영	<u>3</u>	<u>0</u>	1		2	
9급 소계	<u>281</u>	<u>128</u>	0	13	<u>48</u>	92	9급 소계	<u>276</u>	<u>114</u>	0	13	<u>57</u>	92
행 정	<u>85</u>	<u>35</u>			6	44	행 정	<u>83</u>	<u>33</u>			6	44
세 무	<u>5</u>	<u>5</u>					세 무	<u>4</u>	<u>4</u>				
전 산	3	3					전 산	3	3				
사회복지	<u>74</u>	<u>31</u>		3		40	사회복지	<u>70</u>	<u>27</u>		3		40
공 업	<u>16</u>	<u>7</u>			<u>9</u>		공 업	<u>17</u>	<u>6</u>			<u>11</u>	
농 업	1	1					농 업	1	1				
녹 지	3				3		녹 지	3				3	
해양수산	<u>1</u>	<u>1</u>					해양수산	<u>2</u>	<u>2</u>				
보 건	6			6			보 건	6			6		
환 경	<u>3</u>				<u>3</u>		환 경	<u>4</u>				<u>4</u>	
시 설	<u>18</u>	<u>14</u>			4		시 설	<u>19</u>	<u>15</u>			4	
방송통신	3	<u>3</u>			<u>0</u>		방송통신	3	<u>2</u>			<u>1</u>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사회복지	5					5
행정+전산	2	2					행정+전산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시설	4	2			2	
행정+방재안전	<u>1</u>	<u>1</u>					행정+방재안전	1	1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시설+방재안전	<u>1</u>	<u>1</u>				
							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현행							개정안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기관별 직급·직렬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등
방 호	<u>2</u>	<u>2</u>					방 호	<u>0</u>	<u>0</u>				
운 전	21	<u>9</u>		3	<u>9</u>		운 전	21	<u>6</u>		3	<u>12</u>	
시설관리	2	1			1		시설관리	2	1			1	
건축운영	1				1		건축운영	1				1	
전화상담운영	2	2					전화상담운영	2	2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1				1	
기계운영	10	<u>3</u>			<u>7</u>		기계운영	10	<u>1</u>			<u>9</u>	
화공운영	1				1		화공운영	1				1	
사무운영	<u>8</u>	<u>4</u>			1	3	사무운영	<u>7</u>	<u>3</u>			1	3
연구직계	17	<u>9</u>			<u>8</u>		연구직계	17	<u>4</u>			<u>13</u>	
학예연구사	11	<u>8</u>			<u>3</u>		학예연구사	11	<u>3</u>			<u>8</u>	
환경연구사	5				5		환경연구사	5				5	
기록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도직계	3	2			1		지도직계	3	2			1	
농촌지도사	3	2			1		농촌지도사	3	2			1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1월 4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10 호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13조”로 한다.

제9조 중 “제3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3조제3항”을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5조제1항”을 “제16조”로 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3조제4항”을 각각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1항제3호”를 “제5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8조제1항제2호”를 “제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제9조”를 “제6조”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4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제16조제4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20조”를 “제2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제8조제1항”을 “제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5조제3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의2제1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24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이로갈”을 “일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1호 중 “제23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18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4조 중 “제8조, 제14조, 제21조, 제23조”를 “제5조, 제20조, 제3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 (배수, 설비설치 신청) ①조 레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 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하는 자 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제4조 (배수, 설비설치 신청) ①--- - 제13조----- ----- ----- -----.
제9조 (공사 신청의 취하) 조레 제3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신 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 고자 할 때에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취 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9조 (공사 신청의 취하) -- 제13 조제1항----- ----- ----- ----- -----.
제11조 (공사비의 산출) ①조레 제 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는 연초에 세대별, 건축단위 면적 별, 또는 배수관경별 공사비를 정 액 결정 고시하여 시행한다. ②일반행정 관리비와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레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설계 수수료 : 실공사비의 1 00분의 5 2. 3. (생략)	제11조 (공사비의 산출) ①---- 제 13조제3항----- ----- ----- ----- -----.
제12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조	②----- ----- 1. --- 제16조 ----- ----- ----- 2. 3. (현행과 같음)
제12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조	제12조 (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레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시에서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시 지정 금융기관에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조레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③조레 제3조제4항에 의한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3조 (공사의 시공) ①조레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서 경미한 공사 라 함은 다음 각호이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옥내배수 설비공사
2. 가정용 오수만을 배제하는 배수시설
3. 안지름 300mm이하의 연장 3m미만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개수
4. 배수설비의 오수받이의 설치
5. 배수관 배수거의 준설보수등

-- 제13조제5항-----

②-- 제13조제5항-----

③-- 제13조제5항-----

<삭 제>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만을 위한 공사

②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③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은 신청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④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시공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9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대행업자에게 지명 경쟁에 붙일 수 있다.

제14조 (대행업자의 지정)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행업자의 승

<삭 제>

인은 배수공사의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 지정을 승인할 때의 유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시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할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 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15조 (공사 시공에 따른 책임) 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행관계 등의 이익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는 준공 후 3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하자 보수를 위하여

<삭 제>

시공업자는 공사계약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시에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치 않을시에는 하자보증금은 목포시에 귀속된다.

⑤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3. 시장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4.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때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사

실이 발견되었을 때

6. 동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었을 때

7. 대행업자가 도급을 받는 공사를 하도급 하였을 때

8. 기타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6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이 조례 및 시행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별지 제5호의 공공하수도 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

<삭 제>

제17조 (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 제5조제1항-----

-----.

②-- 제5조제1항제3호 -----

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제반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③·④ (생 략)

⑤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신고서는 별지 제5호의 2서식에 의한다.

제18조 (일시 사용허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 (자료제출 명령)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자 및 점용자에게 관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정할 때

4.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

-----.

1. ~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5조제1항제2호-----

-----.

제18조 (일시 사용허가) -- 제6조-----

-----.

제20조 (자료제출 명령) -----

-.

1. --- 제5조-----

2. --- 제20조제1항 -----

--

3. --- 제21조제2항-----

4. --- 제26조-----

과액 조정 신청이 있을 때

제21조 (사용료 고지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는 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고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목포시급수조례의 납부고지서 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조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포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 납기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을 징수한다.

제21조의2 (원인자 부담금) 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설비 설치 신고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한다.

② (생략)

제22조 (점용허가 신청) ① (생략)

② 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제21조 (사용료 고지등) ① -----

-----.

제5조제1항-----

-----.

②-- 제18조제1항-----

③----- 제18조제3항-----

제21조의2 (원인자 부담금) ①-----

----- 제22조제1항-----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 (점용허가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4조-----

의한 공작물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설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료의 조정) ① (생략)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이로갈 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처분된자

2. 3. (생략)

제27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기타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28조 (사용료 등 감면) ①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

-----.

제24조 (사용료의 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일괄 -----

-----.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제25조-----

2. 3. (현행과 같음)

제27조 (연체금과 납입독촉) ①---

----- 제27조-----

-----.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 (사용료 등 감면) ①--- 제25조-----

감면 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④군부대에 대하여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99. 3. 2 규 1287)

⑤ (생략)

제34조 (증표) 조례 제8조, 제14조, 제21조, 제23조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공무원증이나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제>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 (증표) --- 제5조, 제20조, 제33조 -----

-----.

목포시 훈령 제830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1년 1월 4일

목 포 시 장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관리기관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본청)

기 관 명		본 청																										
		본청 소계	감 사 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직급	부 서 명			기 획 예 산 과	공 보 과	세 정 과	회 계 과	정 보 통 신 과	자 치 행 정 과	사 회 복 지 과	노 인 장 애 인 과	여 성 가 족 과	민 원 봉 사 실	관 광 과	관 광 기 점 도 시 추 진 단	문 화 예 술 과	교 육 체 육 과	지 역 경 제 과	기 업 유 치 과	일 자 리 청 년 정 책 과	해 양 항 만 과	수 산 진 흥 과	농 업 정 책 과	도 시 계 획 과	안 전 총 괄 과	건 축 행 정 과	건 설 과	교 통 행 정 과
	총 계	575	12	24	15	48	25	19	36	39	19	29	29	27	12	23	20	20	12	12	16	18	15	18	19	19	24	25
정무직	합 계	1							1																			
	시 장	1							1																			
일반직	일 반 직 합 계	568	12	24	15	48	25	19	34	39	19	29	29	26	12	21	2	2	12	12	16	18	13	18	19	19	24	25
3급	소 계	1							1																			
	행 정	1							1																			
4급	소 계	5		1					1					1				1						1				
	행 정	3		1					1									1										
	행 정 + 기 술	2												1										1				
5급	소 계	2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7		1	1	1	1									1	1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 정 + 시 설	9	1						1				1	1	1			1	1						1	1		
	행정+학예연구관																											
	행 정 + 시 설 +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 +보건	2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 +농촌지도관	1																					1					
6급	소 계	127	3	5	4	10	6	4	9	6	4	5	6	5	2	5	5	5	3	3	5	4	4	4	4	5	6	5
	행 정	31		4	2		2		6		1		2		1	3	3			1	2		1				1	2
	세 무	7		1		6																						
	사 회 복 지	3								1		2																
	해 양 수 산	2																			1	1						
	시 설	1											1															
	행 정 + 세 무	3				3																						
	행정+사회복지	11								5	2	3								1								

기 관 명		본 청																												
		본청 소계	감 사 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직급	부 서 명			기 획 예 산 과	공 보 과	세 정 과	회 계 과	정 보 통 신 과	자 치 행 정 과	사 회 복 지 과	노 인 장 애 인 과	여 성 가 족 과	민 원 봉 사 실	관 광 과	관 광 지 점 도 시 지 단	문 화 예 술 과	교 육 체 육 과	지 역 경 제 과	기 업 유 치 과	일 자 리 청 년 정 책 과	해 양 항 만 과	수 산 진 흥 과	농 업 정 책 과	도 시 계 획 과	안 전 총 괄 과	건 축 행 정 과	건 설 과	교 통 행 정 과		
	행 정 + 전 산	7			1	1		3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 정 + 공 업	4																	1						1					2
	행 정 + 시 설	27	2						1				1	3		1	2		2	2	1				3	2	4	3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시설	1									1																			
	행정+전산+시설	5											2					1							1				1	
	행 정 + 전 산 +방송통신	2						1																	1					
	행정+공업+시설	6	1				1							1	1				1										1	
	행 정 + 공 업 + 시설+방송통신																													
	행정+학예연구사																													
	행 정 + 공 업 +학예연구사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3																				2	1							
	행 정 + 시 설 +학예연구사	1																1												
	행 정 + 농 업 + 환경+농촌지도사	1																						1						
	행 정 + 농 업 + 수익+농촌지도사	2																						2						
	방 호																													
	운 전	3					2		1																					
	건 축 운 영	1																									1			
	통 신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7급	소 계	173	4	9	3	23	11	7	10	10	5	8	5	12	3	5	8	5	3	4	2	5	4	5	7	4	5	6		
	행 정	57	2	9	1		2		9			1		5	1	3	7	2	1	3				1	3	1	2	4		
	세 무	21				20	1																							
	사 회 복 지	17								10	2	5																		
	전 산	5					1	2					1												1					
	공 업	13	1		1		1							2	1	1		3					1		1				1	
	보 건	1												1																
	농 업	2																												
	해 양 수 산	5																				1	4							

기 관 명		본 청																											
		본청 소계	감 사 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직급	부 서 명			기 획 예 산 과	공 보 과	세 정 과	회 계 과	정 보 통 신 과	자 치 행 정 과	사 회 복 지 과	노 인 장 애 인 과	여 성 가 족 과	민 원 봉 사 실	관 광 과	관 광 지 점 도 시 추 진 단	문 화 예 술 과	교 육 체 육 과	지 역 경 제 과	기 업 유 치 과	일 자 리 청 년 정 책 과	해 양 항 만 과	수 산 진 흥 과	농 업 정 책 과	도 시 계 획 과	안 전 총 괄 과	건 축 행 정 과	건 설 과	교 통 행 정 과	
	시 설	19	1				1						2	1	1		1		1		1				4	1	3	2	
	방 송 통 신	3						2																		1			
	행 정 + 세 무	3				3																							
	행정+사회복지	3									2	1																	
	행 정 + 전 산	3					1	1					1																
	행 정 + 공 업	3												1		1													1
	행 정 + 농 업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3											1	1														1	
	행정+학예연구사																												
	전산+방송통신	2						2																					
	보 건 + 간 호	1										1																	
	행정+공업+시설	1																		1									
	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운 전	5			1		4																						
	위 생	1							1																				
	건 축 운 영																												
	전 기 운 영																												
	기 계 운 영																												
	열 관 리 운 영																												
	사 무 운 영	1												1															
8급	소 계	122	4	4	4	10	5	3	3	6	5	6	7	5	2	4	4	4	4	2	4	5	5	3	5	3	6	6	7
	행 정	46	2	3	3		2	1	2	1		1	4	4	1	2	3	3	1	4	2	1		1		1	1	3	
	세 무	9				9																							
	사 회 복 지	12								4	3	5																	
	전 산	1				1																							
	공 업	3					1								1				1										
	농 업	1																					1						
	해 양 수 산	4																			1	3							
	간 호	1								1																			

기 관 명		본 청																											
		본청 소계	감 사 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직급	부 서 명			기 획 예 산 과	공 보 과	세 정 과	회 계 과	정 보 통 신 과	자 치 행 정 과	사 회 복 지 과	노 인 장 애 인 과	여 성 가 족 과	민 원 봉 사 실	관 광 과	관 광 기 점 지 지 단	문 화 예 술 과	교 육 체 육 과	지 역 경 제 과	기 업 유 치 과	일 사 리 청 년 정 책 과	해 양 항 만 과	수 산 진 흥 과	농 업 정 책 과	도 시 계 획 과	안 전 총 괄 과	건 축 행 정 과	건 설 과	교 통 행 정 과	
	시 설	17	1							1		3	1								1				2	1	3	3	1
	방 송 통 신	1						1																					
	행정+사회복지 +전산	1	1																										
	행 정 + 세 무	2		1			1																						
	행 정 + 농 업	2																						2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1																			1								
	행 정 + 시 설	5															1	1							1		1	1	
	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전산+방송통신 +시설	1																											1
	행정+해양수산 +시설	1																					1						
	방 호	1															1												
	운 전	6			1		1		1																1				2
	위 생																												
	건 축 운 영	1																									1		
	전 기 운 영	2																	1							1			
	기 계 운 영																												
	열 관 리 운 영																												
	사 무 운 영																												
9급	소 계	114		4	3	4	2	4	9	16	4	9	10	2	4	6	2	4	3		3	3	1	2	4	3	6	6	
	행 정	33		4	2		2		6			2	1	2	2	1	4	2		1						2	2		
	세 무	4				4																							
	전 산	3						1	1					1															
	사 회 복 지	27								16	3	8																	
	공 업	6			1									1	3									1					
	농 업	1																					1						
	해 양 수 산	2																					2						
	시 설	15										8									1	1		1	1	1	2		

기 관 명		본 청																												
		본청 소계	감 사 실	기획관리국					자치행정복지국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직급	부 서 명			기 획 예 산 과	공 보 과	세 정 과	회 계 과	정 보 통 신 과	자 치 행 정 과	사 회 복 지 과	노 인 장 애 인 과	여 성 가 족 과	민 원 봉 사 실	관 광 과	관 광 기 점 도 시 추 진 단	문 화 예 술 과	교 육 체 육 과	지 역 경 제 과	기 업 유 치 과	일 사 리 청 년 정 책 과	해 양 항 만 과	수 산 진 흥 과	농 업 정 책 과	도 시 계 획 과	안 전 총 괄 과	건 축 행 정 과	건 설 과	교 통 행 정 과		
	방 송 통 신	2						1																			1			
	행 정 + 전 산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시 설	2												1		1														
	행정+방재안전	1																									1			
	시설+방재안전	1																									1			
	방 호																													
	운 전	6										1																	2	3
	시 설 관 리	1																												1
	전 화 상 담 운 영	2						2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3							1								1		1											
연구직	연 구 사 합 계	4							1					1		2														
	학 예 연 구 사	3												1		2														
	기 록 연 구 사	1							1																					
연구직	연 구 사 합 계	2																						2						
	농 촌 지 도 사	2																						2						

〔별표 2〕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의회, 직속기관)

기 관 명		의회	직속기관			
직급	부 서 명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총계	23	98	25	51	22
일반직	일 반 직 합 계	23	98	25	51	22
4급	소 계	1	1	1		
	기 술		1	1		
	행 정 + 기 술	1				
5급	소 계	3	3	1	1	1
	행 정	1				
	행 정 + 시 설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행정+농업+해양수산+환경	1				
	행정+보건+약무+간호		1	1		
	보건+의무+약무+간호		1			1
6급	소 계	4	14	5	5	4
	행 정	3				
	행 정 + 전 산	1				
	행 정 + 보 건		3	2		1
	보 건		1			1
	보 건 + 식 품 위 생		1	1		
	보 건 + 약 무		1	1		
	보 건 + 간 호		3		3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행 정 + 보 건 + 간 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의료기술+약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약무		1		1	
7급	소 계	7	15	5	8	2
	행 정	6				
	의 료 기 술		1		1	
	간 호		3		3	
	보 건 + 식 품 위 생		4	4		
	보 건 + 약 무 + 간 호		1	1		
	보 건 + 간 호		5		3	2
	의 료 기 술 + 간 호		1		1	
	운 전	1				

기 관 명		의회	직속기관			
직급	부 서 명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하당보건지소
8급	소 계	8	52	8	35	9
	행 정	1				
	전 산	1				
	속 기	3				
	공 업		1	1		
	보 건		5	1	4	
	식 품 위 생		2	2		
	의 료 기 술		5		5	
	간 호		30		25	5
	행 정 + 보 건		1	1		
	보 건 + 식 품 위 생		2	2		
	보 건 + 간 호		3	1		2
	의 료 기 술 + 간 호		2		1	1
	사 회 복 지 + 간 호		1			1
	운 전	1				
	통 신 운 영	1				
	사 무 운 영	1				
9급	소 계	-	13	5	2	6
	사 회 복 지		3	2	1	
	보 건		6	2		4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운 전		3	1	1	1

[별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사업소)

기 관 명		사 업 소														
		사업소 소계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기타사업소					
직급	부 서 명		환 경 보 호 과	자 원 순 환 과	환 경 시 설 관 리 과	수 도 과	하 수 과	도 시 재 생 과	도 시 문 화 재 과	공 원 녹 지 과	소 남 해 수 질 관 리 사 무	소 북 항 수 질 관 리 사 무	소 문 예 시 설 관 리 사 무	소 체 육 시 설 관 리 사 무	목 포 자 여 사 박 물 관	소 자 동 차 등 록 사 무
총 계		310	18	33	15	40	27	18	20	27	28	15	18	14	19	18
일반직	일 반 직 합 계	296	18	33	15	36	27	17	18	26	27	15	18	14	14	18
4급	소 계	2	1					1								
	행 정															
	행 정 + 기 술	2	1					1								
5급	소 계	1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 공 업	1														1
	행 정 + 시 설	4						1	1				1	1		
	행 정 + 학 예 연 구 사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2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1										1				
	공 업 + 환 경 + 시 설	1			1											
	행 정 + 녹 지 + 시 설 +농촌지도관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6급	소 계	64	4	5	3	10	5	4	4	6	6	4	4	2	4	3
	행 정	4	1	1		1	1									
	공 업	2									1	1				
	시 설	2					1		1							
	행 정 + 세 무	1														1
	행 정 + 공 업	3									1					2
	행 정 + 환 경	5	2	3												
	행 정 + 시 설	20			2	2	1	4	3	1	1	1	2	2	1	
	행 정 + 공 업 + 시 설	1											1			
	행 정 + 공 업 + 시 설 +방송통신	1											1			
	행 정 + 학 예 연 구 사	2													2	
	행 정 + 농 업 + 녹 지	1								1						
	행 정 + 녹 지 + 시 설	3								3						
	공 업 + 환 경	2									1	1				
	공 업 + 시 설	3				2	1									
	공 업 + 환 경 연 구 사	1									1					
	행 정 + 보 건 + 환 경	1	1													

기 관 명		사 업 소															
		사업소 소계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기타사업소						
직급	부 서 명		환경 보 호 과	자 원 순 환 과	환경 시 설 관 리 과	수 도 과	하 수 과	도 시 재 생 과	도 시 문 화 재 과	공 원 녹 지 과	남해수질관리사업소	북항수질관리사업소	문예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포자연사박물관	자동차등록사무소	
	행 정 + 환 경 + 시 설	1					1										
	행 정 + 시 설 + 녹 지 +농촌지도사	1								1							
	공 업 + 보 건 + 환 경 연 구 사	1				1											
	공 업 + 수 의 + 환 경 +환경연구사	1			1												
	방 호	1														1	
	운 전	1		1													
	토 목 운 영	1				1											
	전 기 운 영	2				1					1						
	기 계 운 영	1										1					
	전 기 운 영 +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7급	소 계	82	8	14	4	13	7	4	6	6	3	3	5	2	3	4	
	행 정	18	2	2	1	3	2	1	3	1			1	1			1
	세 무	1															1
	전 산	1													1		
	방 호	1				1											
	공 업	19		3	1	2	3				3	2	2		1	2	
	녹 지	3								3							
	환 경	5	3			1						1					
	시 설	8				1	1	3	3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환 경	4	2	2													
	행 정 + 시 설	1								1							
	행 정 + 학 예 연 구 사	1													1		
	공 업 + 환 경	1	1														
	공 업 + 시 설	1				1											
	운 전 생	8		7		1											
	위 생	1				1											
	토 목 운 영	0				0											
	건 축 운 영	1											1				
	전 기 운 영	3				1	1						1				
	기 계 운 영	3			2	1											
	열 관 리 운 영	1												1			
8급	소 계	77		10	5	7	10	7	2	5	6	4	6	3	4	8	
	행 정	17			1	3	2	2	2			1	1	1			4
	세 무	2															2
	공 업	12					2			1	3	2	1	1	2		
	환 경	2		1		1											

기 관 명			사 업 소															
			사업소 소계	환경수도사업단					도시발전사업단			기타사업소						
직급	부 서 명			환 경 보 호 과	자 원 순 환 과	환 경 시 설 관 리 과	수 도 과	하 수 과	도 시 재 생 과	도 시 문 화 재 과	공 원 녹 지 과	남 해 소 지 원 리 사 단 소	북 해 소 지 원 리 사 단 소	문 예 시 설 관 리 사 단 소	체 육 시 설 관 리 사 단 소	목 포 자 연 사 박 물 관	자 동 차 등 록 사 무 소	
	시	설	11		1		1	3	3							1	2	
	녹	지	5						1		4							
	방 송 통	신	2												2			
	행 정 + 전	산	1									1						
	행 정 + 시	설	1						1									
	공 업 + 환	경	3		2	1												
	공 업 + 시	설	1			1												
	빙	호																
	운	전	7		6			1										
	전 기 운	영	4					1				1		2				
	기 계 운	영	6			2		1					1					2
	열 관 리 운	영																
	화 공 운	영	1									1						
	사 무 운	영	2				2											
9급	소	계	57	4	3	2	5	4		5	8	11	3	2	6	2	2	
	행	정	6	1			1			2								2
	공	업	11			1	1	1				3	2	1	1	1		
	환	경	4	2	1							1						
	녹	지	3							1	2							
	시	설	4					1		2	1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시	설	2		1							1						
	방	호																
	운	전	12	1	1	1	1	1			4				3			
	시 설 관 리		1								1							
	건 축 운 영		1				1											
	전 기 운 영		1									1						
	기 계 운 영		9				1	1				5		1		1		
	화 공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0								1			
연구 직	연 구 사 합 계		13				4		1	2		1				5		
	학 예 연 구 사		8						1	2							5	
	환 경 연 구 사		5				4					1						
지 도 직	지 도 사 합 계		1								1							
	농 촌 지 도 사		1								1							

〔별표 4〕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표(동)

기 관 명		동																							
직급	부 서 명	동 소계	용 담 1 동	용 담 2 동	연 동	산 정 동	연 산 동	원 산 동	대 성 동	목 원 동	동 명 동	삼 학 동	만 호 동	유 달 동	죽 교 동	북 향 동	용 해 동	이 로 동	상 당 동	하 당 동	신 흥 동	삼 향 동	옥 암 동	부 흥 동	부 주 동
총계		290	13	12	11	12	11	14	12	13	12	11	11	11	12	12	15	12	17	13	14	11	12	13	16
일반직	일반직 합계	290	13	12	11	12	11	14	12	13	12	11	11	11	12	12	15	12	17	13	14	11	12	13	16
5급	소 계	23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1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2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시 설	3							1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 정 + 농 업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공업+해양수산	1					1																		
6급	소 계	47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	2	2	2	2	2	2
	행 정	22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1		1	1	1
	사 회 복 지	5						1					1				1			1					1
	행 정 + 세 무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12	1	1		1	1			1		1			1			1	1		1	1	1		
	행정+농촌지도사	1																			1				
	보 건 + 간 호	3							1		1					1									
	행 정 + 전 산 + 사회 복지	2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수의	1												1											
7급	소 계	51	2	2	2	2	2	3	2	3	2	2	3	2	2	3	2	1	4	3	2	1	1	2	3
	행 정	30	1	1	1	1	1	2	1	2	1	1	2	1	1	2	1	1	2	2	1	1	1	1	2
	사 회 복 지	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3												1			1		1						
8급	소 계	77	5	3	2	3	2	4	3	3	3	4	2	2	3	4	5	3	5	3	4	4	3	3	4
	행 정	30	2	1	1	2	1	1	2		1	2	1		2	1		2		2	1	2	1	2	3
	사 회 복 지	34	3	1	1	1	1	2	1	2	2	1	1	1	1	2	3	1	3	1	2	1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13		1				1		1		1		1		1	2		2		1	1		1	
9급	소 계	92	3	4	4	4	4	4	4	4	4	2	3	4	4	2	5	5	4	4	5	3	5	5	6
	행 정	44	2	3	2	1	2	2	1	2	3	1	2	2	2	1	3	1	2	1	2	1	2	2	4
	사 회 복 지	40	1	1	2	2	2	1	2	1	1	1	1	2	2	1	2	3	2	2	2	2	2	3	2
	행 정 + 사 회 복 지	5				1		1										1		1			1		
	사 무 운 영	3							1	1											1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u>기획예산과</u>	계		<u>24</u>		<u>기획예산과</u>	계		<u>24</u>	
	일반직	소 계	<u>24</u>			일반직	소 계	<u>24</u>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4, 세무1			6급	5	행정4, 세무1
		7급	9	행정9			7급	9	행정9
		<u>8급</u>	<u>3</u>	<u>행정2</u> , 행정+세무1			<u>8급</u>	<u>4</u>	<u>행정3</u> , 행정+세무1
		<u>9급</u>	<u>5</u>	행정4, <u>전산1</u>			<u>9급</u>	<u>4</u>	행정4
<u>공보과</u>	계		<u>15</u>		<u>공보과</u>	계		<u>15</u>	
	일반직	소 계	<u>15</u>			일반직	소 계	<u>15</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4	행정2, 행정+전산1, 통신운영1			6급	4	행정2, 행정+전산1, 통신운영1
		<u>7급</u>	<u>4</u>	행정1, 공업1, 운전1, <u>기계운영1</u>			<u>7급</u>	<u>3</u>	행정1, 공업1, 운전1
		8급	4	행정3, 운전1			8급	4	행정3, 운전1
		<u>9급</u>	<u>2</u>	행정2			<u>9급</u>	<u>3</u>	행정2, <u>공업1</u>
<u>세정과</u>	계		<u>50</u>		<u>세정과</u>	계		<u>48</u>	
	일반직	소 계	<u>50</u>			일반직	소 계	<u>48</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u>6급</u>	<u>9</u>	<u>세무5</u> , 행정+세무3, 행정+전산1			<u>6급</u>	<u>10</u>	<u>세무6</u> , 행정+세무3, 행정+전산1
		<u>7급</u>	<u>25</u>	<u>세무22</u> , 행정+세무3			<u>7급</u>	<u>23</u>	<u>세무20</u> , 행정+세무3
		8급	10	세무9, 전산1			8급	10	세무9, 전산1
		<u>9급</u>	<u>5</u>	<u>세무5</u>			<u>9급</u>	<u>4</u>	<u>세무4</u>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회계과	계		26		회계과	계		25	
	일반직	소 계	26			일반직	소 계	25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5	행정2, 행정+세무+시설1, 행정+공업+시설1, 운전1			6급	6	행정2, 행정+세무+시설1, 행정+공업+시설1, 운전2
		7급	11	행정2, 전산1, 공업1, 시설1, 행정+전산1, 운전5			7급	11	행정2, 세무1 , 전산1, 공업1, 시설1, 행정+전산1, 운전4
		8급	5	행정2, 공업1, 행정+세무1, 운전1			8급	5	행정2, 공업1, 행정+세무1, 운전1
		9급	4	행정4			9급	2	행정2
자치행정과	계		37		자치행정과	계		36	
	정무직		1			정무직		1	
	일반직	소 계	35			일반직	소 계	34	
		3급	1	행정1			3급	1	행정1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9	행정6, 행정+전산1, 행정+시설1, 운전1			6급	9	행정6, 행정+전산1, 행정+시설1, 운전1
		7급	10	행정9, 위생1			7급	10	행정9, 위생1
		8급	3	행정2, 운전1			8급	3	행정2, 운전1
		9급	10	행정7 , 전산1, 행정+전산1, 사무운영1			9급	9	행정6 , 전산1, 행정+전산1, 사무운영1
	연구직	기록연구사	1	기록연구사1		연구직	기록연구사	1	기록연구사1
사회복지과	계		39		사회복지과	계		39	
	일반직	소 계	39			일반직	소 계	39	
		5급	1	행정+사회복지1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6	행정+사회복지5, 사회복지1			6급	6	행정+사회복지5, 사회복지1
		7급	10	사회복지10			7급	10	사회복지10
		8급	4	행정1, 사회복지2 , 간호1			8급	6	행정1, 사회복지4 , 간호1
		9급	18	사회복지18			9급	16	사회복지16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u>여성가족과</u>	계		<u>29</u>		<u>여성가족과</u>	계		<u>29</u>	
	일반직	소 계	<u>29</u>			일반직	소 계	<u>29</u>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1			5급	1	행정+사회복지+보건1
		<u>6급</u>	<u>4</u>	사회복지2, <u>행정+사회복지2</u>			<u>6급</u>	<u>5</u>	사회복지2, <u>행정+사회복지3</u>
		<u>7급</u>	<u>6</u>	행정1, <u>사회복지2</u> , <u>행정+사회복지2</u> , 보건+간호1			<u>7급</u>	<u>8</u>	행정1, <u>사회복지5</u> , <u>행정+사회복지1</u> , 보건+간호1
		<u>8급</u>	<u>7</u>	행정1, <u>사회복지6</u>			<u>8급</u>	<u>6</u>	행정1, <u>사회복지5</u>
		<u>9급</u>	<u>11</u>	<u>사회복지10</u> , 운전1			<u>9급</u>	<u>9</u>	<u>사회복지8</u> , 운전1
<u>민원봉사실</u>	계		<u>29</u>		<u>민원봉사실</u>	계		<u>29</u>	
	일반직	소 계	<u>29</u>			일반직	소 계	<u>29</u>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6	행정2, 시설1, 행정+시설1, 행정+전산+시설2			6급	6	행정2, 시설1, 행정+시설1, 행정+전산+시설2
		7급	5	전산1, 시설2, 행정+시설1, 행정+전산1			7급	5	전산1, 시설2, 행정+시설1, 행정+전산1
		<u>8급</u>	<u>8</u>	행정4, 시설3, <u>필기운영1</u>			<u>8급</u>	<u>7</u>	행정4, 시설3
		<u>9급</u>	<u>9</u>	<u>행정1</u> , 시설8			<u>9급</u>	<u>10</u>	<u>행정2</u> , 시설8
<u>관광거점도시추진단</u>	계			<u>신설</u>	<u>관광거점도시추진단</u>	계		<u>12</u>	
	일반직	소 계				일반직	소 계	<u>12</u>	
							<u>5급</u>	<u>1</u>	<u>행정+시설1</u>
							<u>6급</u>	<u>2</u>	<u>행정1</u> , <u>행정+공업+시설1</u>
							<u>7급</u>	<u>3</u>	<u>행정1</u> , <u>공업1</u> , <u>시설1</u>
							<u>8급</u>	<u>2</u>	<u>행정1</u> , <u>공업1</u>
							<u>9급</u>	<u>4</u>	<u>행정2</u> , <u>전산1</u> , <u>공업1</u>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u>문화예술과</u>	계		<u>19</u>		<u>문화예술과</u>	계		<u>23</u>	
	일반직	소 계	<u>19</u>			일반직	소 계	<u>23</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u>6급</u>	<u>5</u>	행정3, 행정+공업+학예연구사1, <u>학예연구사1</u>			<u>6급</u>	<u>7</u>	행정3, <u>행정+시설1</u> , 행정+공업+학예연구사1, <u>학예연구사2</u>
		7급	5	행정3, 행정+공업1, 공업1			7급	5	행정3, 행정+공업1, 공업1
		<u>8급</u>	<u>3</u>	행정2, 행정+시설1			<u>8급</u>	<u>4</u>	행정2, 행정+시설1, <u>방호1</u>
		<u>9급</u>	<u>5</u>	행정2, <u>공업2</u> , 행정+시설1			<u>9급</u>	<u>6</u>	행정2, <u>공업3</u> , 행정+시설1
<u>지역경제과</u>	계		<u>20</u>		<u>지역경제과</u>	계		<u>20</u>	
	일반직	소 계	<u>20</u>			일반직	소 계	<u>20</u>	
		4급	1	행정1			4급	1	행정1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시설1, 행정+전산+시설1, 행정+시설+학예연구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시설1, 행정+전산+시설1, 행정+시설+학예연구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7급	5	행정2, 공업3			7급	5	행정2, 공업3
		<u>8급</u>	<u>4</u>	행정3, <u>위생1</u>			<u>8급</u>	<u>4</u>	행정3, <u>전기운영1</u>
		9급	4	행정4			9급	4	행정4
<u>기업유치과</u>	계		<u>13</u>		<u>기업유치과</u>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3</u>			일반직	소 계	<u>12</u>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3	행정+시설2, 행정+공업+시설1			6급	3	행정+시설2, 행정+공업+시설1
		7급	3	행정1, 행정+환경1, 시설1			7급	3	행정1, 행정+환경1, 시설1
		8급	2	행정1, 공업1			8급	2	행정1, 공업1
		<u>9급</u>	<u>4</u>	<u>행정3</u> , 필기운영1			<u>9급</u>	<u>3</u>	<u>행정2</u> , 필기운영1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u>일자리 청년정책과</u>	계		<u>12</u>		<u>일자리 청년정책과</u>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2</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3	행정+시설1, 행정1, 행정 +사회복지1			6급	3	행정+시설1, 행정1, 행정 +사회복지1
		<u>7급</u>	<u>4</u>	<u>행정2</u> , 행정+공업+시설1, <u>사무운영1</u>			<u>7급</u>	<u>4</u>	<u>행정3</u> , 행정+공업+시설1
		8급	4	행정4			8급	4	행정4
		9급	-				9급	-	
<u>수 산 진흥과</u>	계		<u>18</u>		<u>수 산 진흥과</u>	계		<u>18</u>	
	일반직	소 계	<u>18</u>			일반직	소 계	<u>18</u>	
		5급	1	행정+해양수산+시설1			5급	1	행정+해양수산+시설1
		6급	4	해양수산1, 행정+해양수산2, 행정+해양수산+시설1			6급	4	해양수산1, 행정+해양수산2, 행정+해양수산+시설1
		7급	5	해양수산4, 행정+해양수산1			7급	5	해양수산4, 행정+해양수산1
		8급	5	행정1, 해양수산3, 행정+ 해양수산+시설1			8급	5	행정1, 해양수산3, 행정+ 해양수산+시설1
		<u>9급</u>	<u>3</u>	<u>해양수산1</u> , 시설1, <u>행정1</u>			<u>9급</u>	<u>3</u>	<u>해양수산2</u> , 시설1
<u>도 시 계획과</u>	계		<u>19</u>		<u>도 시 계획과</u>	계		<u>18</u>	
	일반직	소 계	<u>19</u>			일반직	소 계	<u>18</u>	
		4급	1	행정+기술1			4급	1	행정+기술1
		5급	1	행정+공업+시설1			5급	1	행정+공업+시설1
		<u>6급</u>	<u>5</u>	행정+시설3, <u>행정+공업2</u>			<u>6급</u>	<u>4</u>	행정+시설3, <u>행정+공업1</u>
		<u>7급</u>	<u>4</u>	행정1, <u>시설3</u>			<u>7급</u>	<u>5</u>	행정1, <u>시설4</u>
		<u>8급</u>	<u>5</u>	행정1, <u>시설2</u> , 행정+시설1, 운전1			<u>8급</u>	<u>5</u>	행정1, <u>시설2</u> , 행정+시설1, 운전1
		<u>9급</u>	<u>3</u>	공업1, <u>시설2</u>			<u>9급</u>	<u>2</u>	공업1, <u>시설1</u>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건강증진과	계		<u>51</u>		건강증진과	계		<u>51</u>	
	일반직	소 계	<u>51</u>			일반직	소 계	<u>51</u>	
		5급	1	행정+보건+간호1			5급	1	행정+보건+간호1
		<u>6급</u>	<u>4</u>	보건+간호2 , 행정+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약무1			<u>6급</u>	<u>5</u>	보건+간호3 , 행정+보건+간호1, 보건+의료기술+약무1
		<u>7급</u>	<u>6</u>	간호1 , 의료기술1, 보건+간호3, 의료기술+간호1			<u>7급</u>	<u>8</u>	간호3 , 의료기술1, 보건+간호3, 의료기술+간호1
		<u>8급</u>	<u>38</u>	보건4, 의료기술5, 간호28 , 의료기술+간호1			<u>8급</u>	<u>35</u>	보건4, 의료기술5, 간호25 , 의료기술+간호1
		9급	2	운전1, 사회복지1			9급	2	운전1, 사회복지1
환경보호과	계		<u>18</u>		환경보호과	계		<u>18</u>	
	일반직	소 계	<u>18</u>			일반직	소 계	<u>18</u>	
		4급	1	행정+시설1			4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보건+환경1			5급	1	행정+보건+환경1
		6급	4	행정1, 행정+환경2, 행정+환경+보건1			6급	4	행정1, 행정+환경2, 행정+환경+보건1
		<u>7급</u>	<u>8</u>	행정3 , 환경2 , 행정+환경2, 공업+환경1			<u>7급</u>	<u>8</u>	행정2 , 환경3 , 행정+환경2, 공업+환경1
		8급	-				8급	-	
		9급	4	행정1, 환경2, 운전1			9급	4	행정1, 환경2, 운전1
환경시설관리과	계		<u>16</u>		환경시설관리과	계		<u>15</u>	
	일반직	소 계	<u>16</u>			일반직	소 계	<u>15</u>	
		5급	1	공업+환경+시설1			5급	1	공업+환경+시설1
		6급	3	행정+시설2, 공업+수역+환경+환경연구사1			6급	3	행정+시설2, 공업+수역+환경+환경연구사1
		<u>7급</u>	<u>5</u>	행정1, 공업1, 기계운영3			<u>7급</u>	<u>4</u>	행정1, 공업1, 기계운영2
		8급	5	행정1, 공업+환경1, 공업+시설1, 기계운영2			8급	5	행정1, 공업+환경1, 공업+시설1, 기계운영2
		9급	2	공업1, 운전1			9급	2	공업1, 운전1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u>수도과</u>	계		<u>42</u>		<u>수도과</u>	계		<u>40</u>	
	일반직	소 계	<u>38</u>			일반직	소 계	<u>36</u>	
		5급	1	행정+공업+환경+시설1			5급	1	행정+공업+환경+시설1
		<u>6급</u>	<u>8</u>	행정1, 행정+시설2, 공업+시설2, 공업+보건+환경연구사1, 전기운영1, 전기운영+기계운영1			<u>6급</u>	<u>10</u>	행정1, 행정+시설2, 공업+시설2, 공업+보건+환경연구사1, <u>토목운영1</u> , 전기운영1, 전기운영+기계운영1, <u>사무운영1</u>
		<u>7급</u>	<u>16</u>	<u>행정4</u> , 방호1, <u>공업3</u> , 환경1, 시설1, 공업+시설1, 운전1, 위생1, <u>토목운영1</u> , 전기운영1, 기계운영1			<u>7급</u>	<u>13</u>	<u>행정3</u> , 방호1, <u>공업2</u> , 환경1, 시설1, 공업+시설1, 운전1, 위생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u>8급</u>	<u>7</u>	행정3, 시설1, <u>전기운영1</u> , 사무운영2			<u>8급</u>	<u>7</u>	행정3, <u>환경1</u> , 시설1, 사무운영2
		<u>9급</u>	<u>6</u>	행정1, 공업1, 운전1, 건축운영1, 기계운영1, <u>사무운영1</u>			<u>9급</u>	<u>5</u>	행정1, 공업1, 운전1, 건축운영1, 기계운영1
	연구직	환경연구사	4	환경연구사4		연구직	환경연구사	4	환경연구사4
<u>하수과</u>	계		<u>28</u>		<u>하수과</u>	계		<u>27</u>	
	일반직	소 계	<u>28</u>			일반직	소 계	<u>27</u>	
		5급	1	행정+공업+시설1			5급	1	행정+공업+시설1
		6급	5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행정+환경+시설1			6급	5	행정1, 시설1, 행정+시설1, 공업+시설1, 행정+환경+시설1
		7급	7	행정2, 공업3, 시설1, 전기운영1			7급	7	행정2, 공업3, 시설1, 전기운영1
		<u>8급</u>	<u>11</u>	행정2, <u>공업3</u> , 시설3, 운전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u>8급</u>	<u>10</u>	행정2, <u>공업2</u> , 시설3, 운전1, 전기운영1, 기계운영1
		9급	4	시설1, 공업1, 운전1, 기계운영1			9급	4	시설1, 공업1, 운전1, 기계운영1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남해수질 관리사무소	계		28		남해수질 관리사무소	계		28	
	일반직	소 계	27			일반직	소 계	27	
		5급	1	행정+공업+시설1			5급	1	행정+공업+시설1
		6급	5	공업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공업+환경연구사1, 전기운영1			6급	6	공업1, 행정+공업1, 행정+시설1, 공업+환경1, 공업+환경연구사1, 전기운영1
		7급	3	공업3			7급	3	공업3
		8급	7	공업2, 행정+전산1, 공업+환경1, 전기운영2, 화공운영1			8급	6	공업3, 행정+전산1, 전기운영1, 화공운영1
		9급	11	공업4, 행정+시설1, 전기운영1, 기계운영5			9급	11	공업3, 행정+시설1, 환경1, 전기운영1, 기계운영5
	연구직	환경연구사	1	환경연구사1		연구직	환경연구사	1	환경연구사1
문예시설 관리사무소	계		23		문예시설 관리사무소	계		18	
	일반직	소 계	22			일반직	소 계	18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5	행정+시설3, 행정+공업+시설1, 행정+공업+시설+통신1			6급	4	행정+시설2, 행정+공업+시설1, 행정+공업+시설+통신1
		7급	5	행정1, 공업2, 건축운영1, 전기운영1			7급	5	행정1, 공업2, 건축운영1, 전기운영1
		8급	7	행정1, 통신2, 방호1, 기계운영1, 전기운영1, 열관리운영1			8급	6	행정1, 공업1, 통신2, 전기운영2
		9급	4	공업2, 방호1, 기계운영1			9급	2	공업1, 기계운영1
	연구직	학예연구사	1	학예연구사1		연구직	학예연구사	2	

현행					개정안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별 내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계		<u>14</u>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계		<u>14</u>	
	일반직	소 계	<u>14</u>			일반직	소 계	<u>14</u>	
		5급	1	행정+시설1			5급	1	행정+시설1
		6급	2	행정+시설2			6급	2	행정+시설2
		7급	2	행정1, 열관리운영1			7급	2	행정1, 열관리운영1
		8급	3	행정1, 공업1, 시설1			8급	3	행정1, 공업1, 시설1
		<u>9급</u>	<u>6</u>	공업1, 방송통신1, 운전3, <u>방호1</u>			<u>9급</u>	<u>6</u>	공업1, 방송통신1, 운전3, <u>워드운영1</u>
자동차등록사무소	계		<u>18</u>		자동차등록사무소	계		<u>18</u>	
	일반직	소 계	<u>18</u>			일반직	소 계	<u>18</u>	
		5급	1	행정+공업1			5급	1	행정+공업1
		6급	3	행정+공업2, 행정+세무1			6급	3	행정+공업2, 행정+세무1
		7급	4	행정1, 세무1, 공업2			7급	4	행정1, 세무1, 공업2
		<u>8급</u>	<u>8</u>	<u>행정5</u> , <u>세무1</u> , 기계운영2			<u>8급</u>	<u>8</u>	<u>행정4</u> , <u>세무2</u> , 기계운영2
		9급	2	행정2			9급	2	행정2
<u>연 동</u>	계		<u>12</u>		<u>연 동</u>	계		<u>11</u>	
	일반직	소 계	<u>12</u>			일반직	소 계	<u>11</u>	
		5급	1	행정1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행정+전산+사회복지1			6급	2	행정1, 행정+전산+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사회복지1
		<u>8급</u>	<u>3</u>	<u>행정2</u> , 사회복지1			<u>8급</u>	<u>2</u>	<u>행정1</u> , 사회복지1
		9급	4	행정2, 사회복지2			9급	4	행정2, 사회복지2

정원 승인서

부 서		증감 (계)	증 감 내 역				비고
			직 종	직 렬	직급	승인정원	
합 계		-					
본 청	소 계	△46				△46	
	기 획 예 산 과	-	일반직	행 정	8급	⊕1	
				전 산	9급	△1	
	공 보 과	-	"	기 계 운 영	7급	△1	
				공 업	9급	⊕1	
	세 정 과	△2	"	세 무	6급	⊕1	
				세 무	7급	△2	
				세 무	9급	△1	
	회 계 과	△1	"	운 전	6급	⊕1	
				운 전	7급	△1	
				세 무	7급	⊕1	
				행 정	9급	△2	
	자 치 행 정 과	△1	"	행 정	9급	△1	
	사 회 복 지 과	-	"	사 회 복 지	9급	△2	
				사 회 복 지	8급	⊕2	
	여 성 가 족 과	-	"	행정 + 사 회 복 지	6급	⊕1	
				행정 + 사 회 복 지	7급	△1	
				사 회 복 지	7급	⊕3	
				사 회 복 지	8급	△1	
				사 회 복 지	9급	△2	
	민 원 봉 사 실	-	"	사 무 운 영	8급	△1	
				행 정	9급	⊕1	
	관광거점도시추진단 [과 신 설]	⊕12	"	행 정 + 시 설	5급	⊕1	
				행 정	6급	⊕1	
				행정+공업+시설	6급	⊕1	
				행 정	7급	⊕1	
				공 업	7급	⊕1	
				시 설	7급	⊕1	
				행 정	8급	⊕1	
				공 업	8급	⊕1	
				행 정	9급	⊕2	
				전 산	9급	⊕1	
				공 업	9급	⊕1	

부 서	증감 (계)	증 감 내 역				비고
		직 종	직 렬	직급	승인정원	
본 청	문 화 예 술 과	연구직	행 정 + 시 설	6급	⊕1	
			학 예 연 구 사	연구사	⊕1	
		일반직	방 호	8급	⊕1	
			공 업	9급	⊕1	
	문 예 시 설 관 리 과	△23	국 소 관 변 경			
	체 육 시 설 관 리 과	△14	국 소 관 변 경			
	목 포 자연사 박물관	△19	국 소 관 변 경			
	지 역 경 제 과	"	위 생	8급	△1	
			전 기 운 영	8급	⊕1	
	기 업 유 치 과	△1	행 정	9급	△1	
	일 자리 청년 정책 과	"	행 정	7급	⊕1	
			사 무 운 영	7급	△1	
	수 산 진 흥 과	"	행 정	9급	△1	
			해 양 수 산	9급	⊕1	
	도 시 계 획 과	"	행 정 + 공 업	6급	△1	
			시 설	7급	⊕1	
			시 설	9급	△1	
	안 전 총 괄 과	"	방 재 안 전	8급	△1	
			방 재 안 전	9급	⊕1	
	건 축 행 정 과	"	건 축 운 영	7급	△1	
			시 설	9급	⊕1	
	건 설 과	"	시 설	9급	⊕1	
			워 드 운 영	9급	△1	
직 속	소 계	-			-	
	건 강 증 진 과	"	보 건 + 간 호	6급	⊕1	
			간 호	7급	⊕2	
			간 호	8급	△3	

부 서		증감 (계)	증 감 내 역				비고
			직 종	직 렬	직급	승인정원	
사업소	소 계	⊕47				⊕47	
	환경보호과	-	"	행정	7급	△1	
				환경	7급	⊕1	
	환경시설관리과	△1	"	기계운영	7급	△1	
	수도과	△2	"	토목운영	6급	⊕1	
				사무운영	6급	⊕1	
				행정	7급	△1	
				공업	7급	△1	
				토목운영	7급	△1	
				환경	8급	⊕1	
				전기운영	8급	△1	
				사무운영	9급	△1	
	하수과	△1	"	공업	8급	△1	
	문예시설관리사무소	⊕23	"	[국소관변경]		⊕23	
		△5	"	행정 + 시설	6급	△1	
			연구직	학예연구사	연구사	△1	
			일반직	방호	8급	△1	
				열관리운영	8급	△1	
				공업	9급	△1	
	체육시설관리사무소	⊕14	"	[국소관변경]		⊕14	
	목포자연사박물관	⊕19	"	[국소관변경]		⊕19	
	남해수질관리사무소	-	"	공업 + 환경	6급	⊕1	
				공업 + 환경	8급	△1	
				공업	8급	⊕1	
				전기운영	8급	△1	
				환경	9급	⊕1	
				공업	9급	△1	
	자동차등록사무소	-	"	행정	8급	△1	
			"	세무	8급	⊕1	
동	소 계	△1				△1	
	연 동	△1	"	행정	8급	△1	

목포시 공고 제2021 - 9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차 연장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차 연장 조치(집합 제한 및 집합 금지)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1년 1월 4일

목 포 시 장**①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 (벌칙) 동법 제83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 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2020. 12. 30.부터 시행)

제83조(과태료)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② 행정명령 조치 사항

① (중점관리시설 및 일반관리시설) 유흥시설 5종*, 홀덤펍은 집합금지, 이외 시설은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 등 조치 강화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홀덤펍	▶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	▶ 5명부터 예약, 동반입장 금지 등 식당에서 5명부터 모임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 결혼식, 공무 및 필수 경영활동 제외(다만, 직장 회식은 금지) ※ 기업체 구내식당 : 5인 이상 모임 금지에 해당되지 않음 ▶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패스트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
카페 (무인카페 포함)	▶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 장비대여, 탈의실 외 스키장 내 부대시설(식당·카페·오락실 등) 집합금지 ▶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직업훈련기관	▶ 음식 섭취 금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종합소매업 (300㎡ 이상)	▶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
아파트 내 편의 시설	▶ 운영 중단
주민센터	▶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숙박시설	▶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
집합·모임·행사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단, 이 경우에도 2단계에 따른 모임·행사 인원제한 조치(비수도권 100명 미만) 적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100인 미만 인원 제한 <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버스, 기차 등 교통수단(차량) 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경기장별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등교	▶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 제작·송출 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반드시 포함하여 전체 20명 이내(비대면 위한 영상 제작·송출인력, 참여 신도 등)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연말·연시 특별방역+거리두기 2단계)
직장근무	▶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③ 기타 조치 사항

1. (처분사유) 코로나19 유행 양상, 감염병 통제범위,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여 방역관리 강화 추진
2. (처분내용)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3. (처분기간) 2021. 1. 4.(월) 0시 ~ 1. 17.(일) 24시
4. (처분의 효력 발생일) 2021. 1. 4.(월) 0시
5. (처분서의 교부요청)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이의신청)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벌칙 규정)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 또는 과태료(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영업을 전면금지 되며,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8. 업무 담당자

구 분	대 상 시 설	소 속	연락처
중점 관리 시설 및 일반 관리 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보 건 위 생 과 (식 품 위 생 팀)	061-270-8946
	콜라텍	교 육 체 육 과	061-270-3561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지 역 경 제 과	061-270-3359
	노래연습장	보 건 위 생 과 (공 중 위 생 팀)	061-270-8943
	실내 스탠딩공연장	문 화 예 술 과	061-270-8992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보 건 위 생 과 (식 품 위 생 팀)	061-270-8950
	실내·외 체육시설 (겨울스포츠시설)	교 육 체 육 과	061-270-3251
	결혼식장	여 성 가 족 과	061-270-3283
	장례식장	노 인 장 애 인 과	061-270-8862
	목욕장업	보 건 위 생 과 (공 중 위 생 팀)	061-270-8943
	영화관, 공연장	문 화 예 술 과	061-270-8992
	오락실, PC방, 멀티방·DVD방	보 건 위 생 과 (공 중 위 생 팀)	061-270-8944
	콜라텍, 학원·교습소, 독서실	교 육 체 육 과	061-270-3561
	스터디카페	건 강 증 진 과	061-270-4262

구 분	대 상 시 설	소 속	연락처
	놀이공원, 워터파크	관 광 과	061-270-8216
	이·미용업	보 건 위 생 과 (공 중 위 생 팀)	061-270-8944
	직업훈련기관	일자리청년정책과	061-270-8794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지 역 경 제 과	061-270-8785
기타 시설	대중교통	교 통 행 정 과	061-270-8338
	종교시설	문 화 예 술 과	061-270-8286
	아파트 내 편의시설	건 축 행 정 과	061-270-3474